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박희승

이학영 • 민홍철 • 강유정

김성회 · 김승원 · 염태영

정성호 · 이연희 · 김준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.24%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.

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,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이에 내국세의 19.24%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.24%로 1%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, 헌법에서 보장한 지 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1호 중 "1만분의 1,924"를 "1만분의 2,024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교부세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
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	
1. 해당 연도의 내국세(목적세	1
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	
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	
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	
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	
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	
외한다. 이하 같다) 총액의 1	<u>1</u>
<u>만분의 1,924</u> 에 해당하는 금	만분의 2,024
<u>ज</u> ्	_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